

의안번호	2219511
의 퇴 인	이주영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계번호	26C306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5조의6 (보호대상아동의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)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 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 ※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9507)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수야외활동 프 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음을 규정	재량규정
2	안 제37조의2 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6 (보호대상아동의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7조의2 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게
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
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에 필요한
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본 법률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9507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할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인증을 받을 프로그램의 성격과 비용을 알 수 없고, 본 개정안 제15조의6제2항은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의 대상·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대상자 수도 알 수 없음
 - 안 제37조의2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외활동 비용을 지원할 취약계층 아동의 대상과 지원 내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